

#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 Issues of Copyright Relating to Constructing and Managing Digital Library in the Internet Age

홍재현(Jae-Hyun Hong)\*\*

### 목 차

1 서론	3.2.2 TOP 페이지 링크
2 DB구축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3.2.3 SUB 페이지 링크
2.1 서지정보의 DB화	3.2.4 일부소재 링크
2.2 저작물 자체의 DB화	3.2.5 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링크
2.3 사실정보의 DB화	3.3 링크리스트
2.4 인명정보의 DB화	4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3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4.1 관내에서의 이용자 서비스
3.1 인터넷상의 저작물 자체의 이용	4.2 관외에서의 이용자 요청에 응한 서비스
3.2 링크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5 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대책의 기본 방향
3.2.1 링크방법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논문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서지정보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사실정보, 인명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인터넷 상의 저작물 자체의 이용과 링크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내에서의 이용자 서비스와 관외의 이용자 요구에 응한 저작물 전송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 상황 하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저작권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ssues of copyright relating to digitization of bibliographic data, copyrighted works, factual data, and manpower's data that the library have. It analyzed issues of copyright relating to the use of digital works and linking. Also It investigated legal issues related information service for user in the library and digital transmission service on need of user out of the library. Finally, this paper proposed basic task for solving issues of copyright in the context of digital libraries.

\* 이 논문은 1998년 12월 18일 광주과학기술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논문 접수일 : 1999년 1월 4일

## 1 서 론

세계의 도서관계는 디지털기술,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학술도서관을 중심으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이용자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의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종이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멀티미디어도서관(multimedia library),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네트워크에 접속된 일종의 정보서버(information server)라 할 수 있다. 정보서버 내에는 디지털화된 도서, 학술논문, 보고서, 그림정보 등이 집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의 어딘가에 이용자가 구하는 디지털문헌이 탑재되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 액세스하여 상당한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즉시 입수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이제까지의 도서관과 같이 도서 또는 잡지를 수집하여 축적해 둘 필요가 없으며, 종래의 도서관처럼 개관시간의 제약도 없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해 가지 않아도 24시간 집에서나 학교, 사무실, 연구실 등에 있으면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항시 디지털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중이라는 것도 없고 분실의 우려도 없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혹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전제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있어서는 원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종이기반 자료의 rekeying에 의한 복제, 스캐닝에 의한 복제, 디지털자료로부터의 복제, 다운로드에 의한

복제,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관계의 처리문제 등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컴퓨터에 의한 신속하고, 용이하고, 저렴하며, 은밀한 복제·수정·편집·변경·조작 등이 가능해지고, 기술적으로 복제에 의한 질의 저하가 없음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문자, 음성, 화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멀티미디어의 보급의 증가와 전국 및 전세계로의 디지털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이용의 보급도 새로운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홍재현 1996) 따라서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침해의 위험을 피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시 및 작성된 디지털자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검토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는 먼저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저작권의 문제점과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관계를 분석하고, 저작권 중개자로서 정보전문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자체의 이용과 링크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법적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구축된 디지털자료의 관내 이용자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전송서비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현 상황 하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저작권 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2 DB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최근 디지털도서관의 구상을 지향하는 다수의

실험적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의회도서관의 NDLP(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 NSF/ARPA/NASA Initiative, 영국의 국립도서관의 Initiative of Access Projects, 일본의 NACSIS-ELS 프로젝트, Ariadne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LG상남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Kore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 KRIC),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은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적지 않고, 정보통신기반도 아직 그것에 부합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다가, 무엇보다도 저작권제도가 이런 움직임을 근본적인 점에서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 인식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의 공공적 사명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는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저작권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③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2.1 서지정보 DB화

일반적으로 단순한 서지적 사항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도서관의 단순한 목록정보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CD-ROM인 “한국문헌목록정보”의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두영 외 1997).

그러나 각 서지사항이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되고, 더욱이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문헌의 취사선택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것에 편집저작권이 성립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원문헌목록의 존재가 눈에 띄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기에 앞서 편집저작자에게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잡지의 목차를 스캐닝 또는 rekeying에 의해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잡지의 목차는 저자명이나 기사·논문의 표제, 게재 페이지 등의 단순한 서지조각이나 문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 수치 등의 사실정보
- 단순 서지정보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간결한 구
- freeware

## 2.2 저작물 자체의 DB화

각 대학도서관 등에서 고문서나 고전자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공유(public domain)에 귀속되어 있다. 때문에 디지털화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작물이 아닌 것이나 저작물이라도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을 제외한 저작물들을 rekeying이나 스캐닝,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데에는, 아직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규정(이를테면 가칭 "디지털화권")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축적과 관련하여 복제권의 처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저작권법 28조 2호의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제의 규정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마련된 규정이어서, 모든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홍재현 1997).

요컨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도서, 학술잡지, 논문, 보고서, 회의록 등의 전문을 수록한 전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는 각 저작물의 저작자나 출판사 또는 발행기관 등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한 국내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이나 회의록, 교내 교수들의 논문, 기술보고서 등의 전문을 입력하기 위하여 학회나 기타 저작권자로부터의 구두허락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용허락은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특약이나 조건을 명시한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두영 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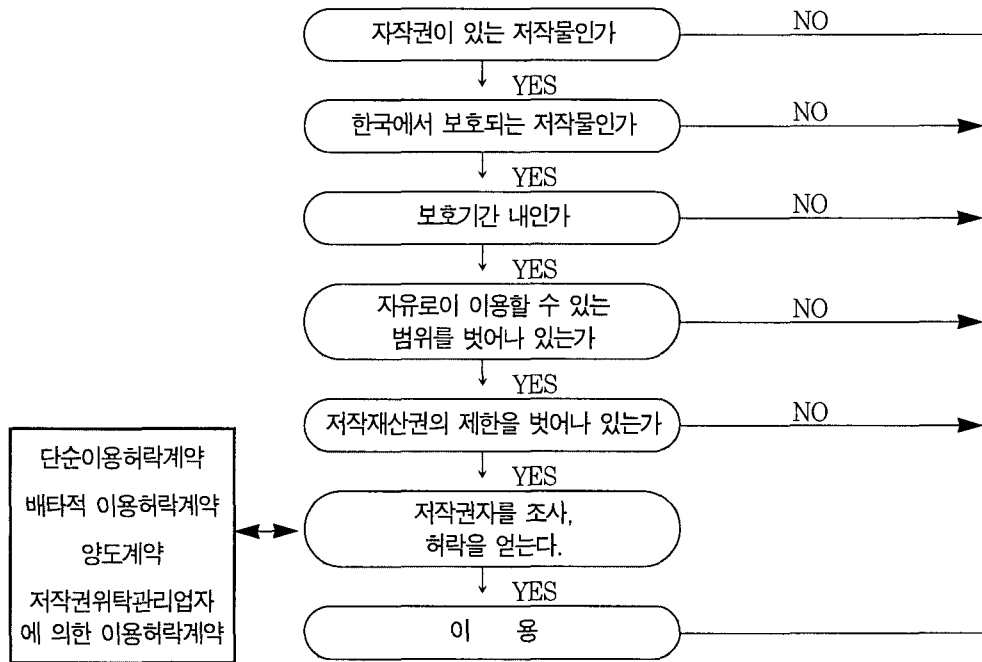
저작물의 이용은 단순 이용허락계약이나 배타적 이용허락계약, 양도계약,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이용허락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계약 중에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권리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정보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

## 2.3 사실정보의 DB화

각종 통계의 수치데이터나 화확물질의 구조, 관측기록, 코드 등의 사실정보를 수록한 경우에 1차저작권자와 2차저작권자의 권리 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치데이터 등의 사실정보는 저작물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선택 또는 배열되는 관점에서 창작성이 있는 사실정보의 집합체는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성이 있는 사실데이터베이스 그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편입하려면, 해당 사실데이터베이스의 1차저작권자(편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 2.4 인명정보의 DB화



〈그림 1〉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전문가의 업무

인물의 개인적 정보 내지는 데이터를 수록한 인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3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 3.1 인터넷상의 저작물 자체의 이용

우리는 별 생각없이 인터넷 상에 발행되어 있는 웹 문서나 전자우편(E-mail) 정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좋은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잘 디자인한 웹 페이지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브라우저의

View|Source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윈도우 상에 원시코드(source code)를 불러 내어 HTML 마크업을 추적하고, .gif 파일의 위치를 찾아내고, 스크립트(scripts)를 확인하는 등 내부정보를 얻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제3자의 자원을 가져오고, 붙이고, 변경하고, 달리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웹 문서 이용의 관행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 ① HTML 소스코드를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② HTML 소스코드를 당신의 웹 페이지 작성을 위한 템플릿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인터넷 상에는 개설되어 있는 수많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 중,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

터를 제외하면, 이것 또한 저작물이다. 웹 문서가 아이디어의 표현물인 경우에는 잡지, 도서 또는 멀티미디어 CD-ROM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CD상의 모든 정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인터넷 상에 떠 있는 창작성이 있는 웹 문서나 전자우편, 그래픽 등의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있으며, 그 사람의 저작권이 소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자로부터 그 자료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권리관계의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정사용은 웹 상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이것은 자신의 웹 페이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웹 페이지로부터 자료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즉, 제3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성질을 가진 정보를 다른 축적매체에 고정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탑재할 경우에는 사적이용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刊하는 것이 되므로, 원 홈페이지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자의 허락을 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공정사용의 판단기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사용은 웹 상에서 상당히 제한될 것 같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입수가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면책규정인 28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서관 등이 복제할 수 있는 것

은 그 소장한 도서관자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인터넷 상에서 입수가 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소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이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클라이언트(client)는 웹 페이지를 이용자 자신의 터미널상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RAM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사용한다. 이 경우 복제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격렬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만약에 이를 복제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면으로는 볼 수 있지만, 하드디스크로의 축적이나 하드카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RAM의 순간적인 복제는 허락한다도 해도, 전자매체인 하드디스크나 종이에 고정하는 하드카피까지는 복제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저작권자 의향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공유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의 웹 페이지상의 자료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웹 페이지에 편입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러나 공유 자료의 편집물인 경우 개개 요소의 사용이 적법할 지라도, 자료의 전체 집합물은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3.2 링크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디지털도서관 창구에서 링크에 의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둘러싼

범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영미에서는 홈페이지의 링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문제에 관한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공인된 학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과 외국에서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본 부분은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웹상에서 소재를 링크하는 주요 방법과, 창작자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링크상황을 검토한다.

### 3.2.1 링크 방법

#### 1)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s)

HREF("Hypertext REFerence")링크는 가장 기본적인 하이퍼링크이다. HREF 링크는 인터넷 상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독자를 안내한다. 링크는 한 페이지의 맨위로의 링크 또는 한 문서 내에서의 링크와 같이 동일한 페이지 상에 있는 다른 곳으로 연결될 수 있거나, 동일한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TOP 페이지 또는 서브계층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다.

#### 2) IMG 링크

HTML에서의 두 번째 유형의 링크는 IMG("IMaGe")링크이다. HREF 링크와 같이, IMG 링크는 아주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파일을 참조시킬 수 있다. HREF 링크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은 보통 새로 접근된 페이지의 다른 모양이나 URL 주소의 변경으로부터 페이지가 변경되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IMG 링크의 경우 소재의 두 조각(텍스트와 그래픽)은 두 개의 매우 다른 소스로부터 가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최종이용자들은 두 조각의 소재가 통합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IMG 링크는 HREF링크와 다르다.

#### 3) 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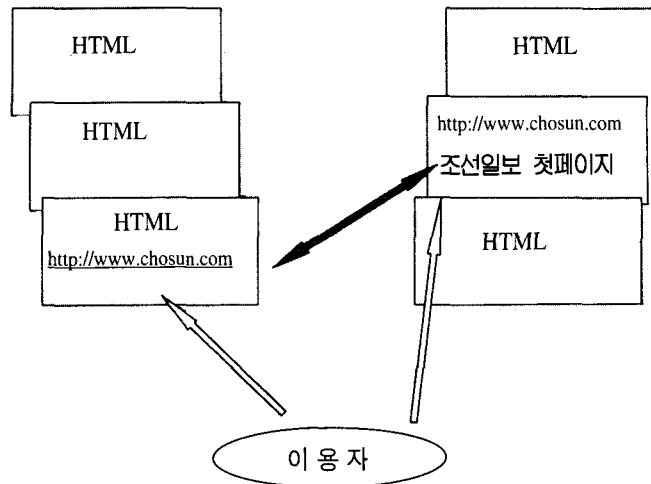
링크의 형태로서 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링크가 있다. 프레임은 HREF와 IMG링크와 달리, 웹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웹페이지로 원거리 사이트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며, 뷰어(viewer)로 하여금 링크하고 있는 사이트의 연결을 끊지 않고 다른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제3자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자신의 웹 페이지 상에서 제3자의 홈페이지를 마치 자신의 홈페이지인양 이용자에게 보여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3.2.2 TOP 페이지 링크

TOP 페이지의 링크는 단순히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때, 좌측의 A의 홈페이지 내에 우측의 B가 만든 홈페이지 상의 첫 페이지를 표시하는 URL(예: 디지털조선의 첫페이지의 어드레스인 http://www.chosun.com)를 적어 놓은 것이 TOP 페이지 링크이다. 이처럼 링크하면, 이용자는 A의 홈페이지에 액세스해 있지만 그 접속관계가 끊기고 B의 홈페이지 쪽으로 접속되어, B의 홈페이지 상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형태(예: 디지털조선에 액세스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즉, URL을 링크함으로써 링크 쪽으로 점프를 해서 링크 쪽의 내용을 보는 형태의 이용이 되지만, A는 단지 주소를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B의 데이터를 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B쪽은 자신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유선송신 내지 공중송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A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



〈그림 2〉 TOP 페이지 링크

럽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TOP 페이지 링크의 경우는 이용자들은 보통 URL 주소의 변경으로부터 웹 페이지가 변경되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단순히 TOP 페이지의 URL로의 링크는 저작권침해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 3.2.3 SUB 페이지 링크

서브 페이지의 링크는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의 하위계층을 이루는 페이지로의 연결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디지털조선의 첫페이지 (<http://www.chosun.com>)의 하위계층의 하나인 사설/컬럼 (<http://www.chosun.com/c.htm>)으로의 연결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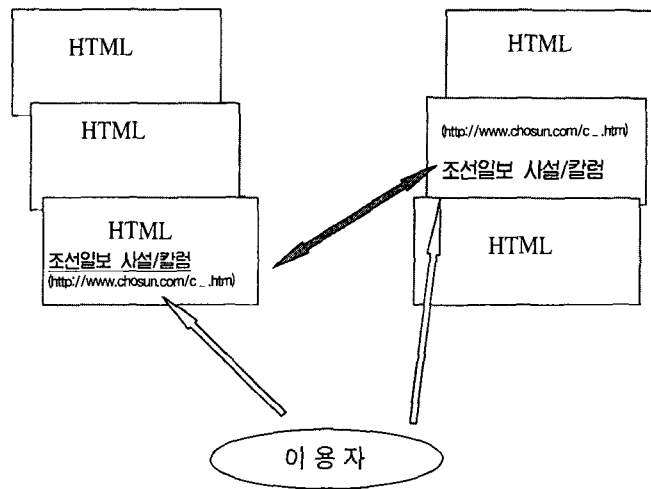
현재 웹상에서의 이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서버페이지로의 링크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서버페이지로의 링크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링크된 쪽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영국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Shetland Times Ltd. v. Dr. Jonathan Wills and Another"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Shetland Times는 인터넷 상에서 신문 기사를 공개하고 있는 회사였다. 가장 첫 페이지에 기사의 헤드라인을 리스트업하고, 그 기사 헤드라인의 버튼을 링크하면, 기사 본문페이지로 이동하는 형태로 신문기사의 데이터를 게재해 공개하고 있었다. 또한 기사의 헤드라인이 리스트업되어 있는 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다.

한편, 피고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인을 첫 페이지에 리스트업하고, 그것을 링크하면 아래 계층의 기사본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었다. 문제는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 Shetland Times의 기사본문으로 점프하는 버튼과 URL을 게재한 점에 있었다. 이 링크로 인하여 직접 기사본문으로 바로 점프함으로써,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Shetland Times의 첫 페이지가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Shetland Times는 이용자가 첫 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됨에 따라 광고수입이 줄





〈그림 3〉 SUB 페이지 링크

게 되었다. 그러자 Shetland Times는 피고가 헤드라인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링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창작적인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스코틀랜드 민사상급재판소의 해밀턴경은 1996년 10월 24일,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결국 정지가처분을 인정하고 편리하게 URL을 탑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하위 계층의 페이지로 링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언급하지 않고, “기사의 헤드라인은 저작물성이 있는 것이다. 저작물인 헤드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http://www.bitlaw.com/internet/linking.html> ).

그래서 단순히 하위계층 페이지의 URL을 링크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경우에 따라 서브페이지 링크는 타인이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들인 것에 무임승차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그 반사적

인 효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불법행위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 상황에서 서브 페이지의 링크가 일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홈페이지의 저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저작권에 대하여 특별한 접속규정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가 있듯이, 홈페이지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접속규정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3자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금지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의 링크를 금지하고 있다면, 저작자의 홈페이지의 서브페이지(특히 여러 단계를 거친 경우의 서브페이지)를 무단으로 링크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저작자의 접속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다른 사람의 창작성이 있는 서브페이지를 링크하기 전에 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며, 해당 저작권 자로부터 허락(서면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더욱

중음)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 3.2.4 일부 소재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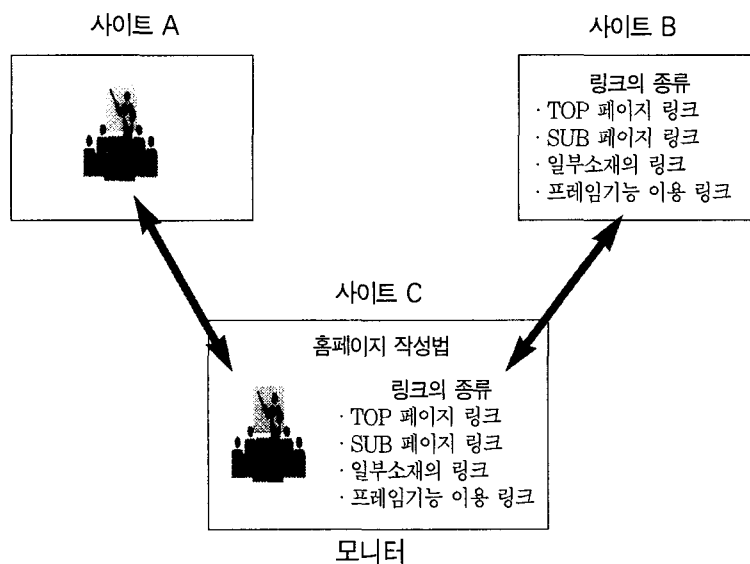
이것은 페이지 일부의 소재(contents)로 링크를 해서, 자신의 페이지 내에 표시되게 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4>는 일부 소재의 링크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용자가 사이트 C에 액세스한 경우, 자신의 단말 상에서 본 화상의 데이터가 모두 사이트 C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 C의 작성자는 자신의 것에서 소재 C라는 것을 읽어 입력하고, 일단 사이트 C와 접속을 끊고 다음에 사이트 A로 가서, 소재 A를 읽어 입력한 것이다. 또 사이트 B로 점프해서, 사이트 B에서 소재 B를 읽어 입력하고 자신의 단말상에 재생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일부 소재의 링크는 이미지나 문서, 파일 등에 대한 직접 링크라는 점에서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대한 단순링크와는 구별된다.

일부에서는 소재 A나 소재 B를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단말 상에서 재생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단말 상에서 일단 복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복제권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사이트 C의 개발자는 링크되는 쪽을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송신시키고 있으므로,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문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링크를 한 것이지 복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소재 자체는 링크되는 쪽이 스스로 임의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침해가 아니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 버려도 좋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일반적으로 허락없이 IMG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링크하는 것은 네티켓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무단 IMG 링크는 저작권법하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소재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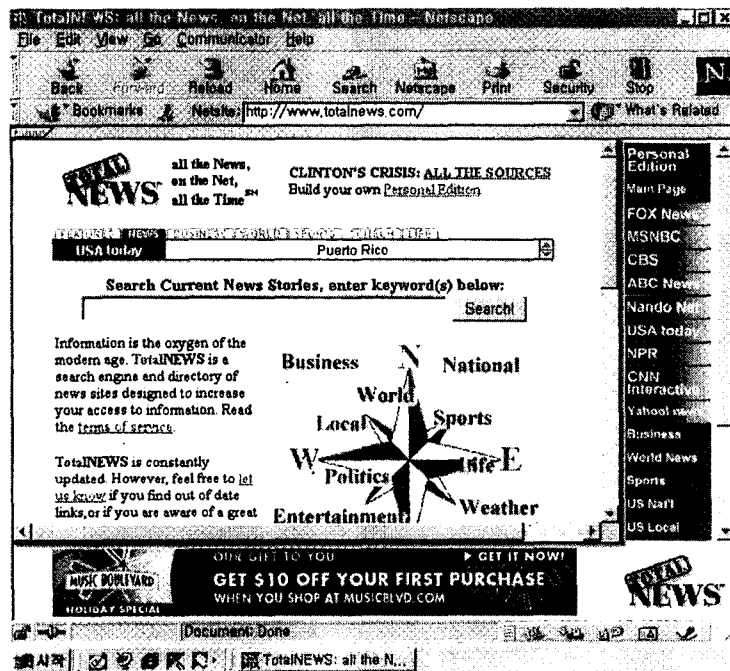
<그림 4> 일부 소재의 링크

않거나 다른 소재에 편입하기 위한 소재를 무단으로 직접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링크되는 쪽이 자신의 단말상에서의 복제나 웹을 통한 송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부를 절취하여 다른 것과 편성하기 위한 복제나 송신까지를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링크된 소재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며, 창작성이 있는 소재의 무단링크에 의한 편입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단순링크와 마찬가지로, 링크할 홈페이지의 접속규정이나 저작권 표시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저작자의 권리주장이나 접속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창작성이 있는 소재를 링크하기 전에 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며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2.5 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링크

다른 사람의 웹 사이트(페이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을 사용하는 관행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프레임 기능을 사용한 링크의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그것은 1997년 2월 20일에 소송이 제기된 *The Washington Post Company v. Total News, Inc*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뉴스기관에 대한 수 백 개의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www.totalnews.com](http://www.totalnews.com)의 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피고는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정보제공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토탈뉴스사이고, 원고는 워싱턴 포스트, CNN, 타임, 다우존스, 로이타 등의 신



〈그림 5〉 Total News사의 홈페이지 (<http://www.totalnews.com>)

문, 잡지, 방송, 통신사 등 8개사이다.

Total News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은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소송의 발단은 원고회사인 Washington Post 사가 최신뉴스와 정보를 포함한 자사의 웹사이트의 소재가 어떤 알림이나 허락 없이 소규모 회사인 Total News사에 의해 링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데에서 발생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 각사가 개설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무단 링크해서, 피고회사의 로고가 붙은 프레임이 있는 홈페이지 상에서 원고 각사의 명칭을 클릭하면, 원고 각사가 제공하고 있는 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측(링크되는 쪽)은 Total News사가 무단으로 링크를 해서, 링크되는 쪽의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상표권 침해, 불공정경쟁 등의 문제를 제기시킨다고 주장하고, Total News사를 뉴욕시의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얼마 전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링크되고 있던 원고측이 기소를 취하하고, 그 대신에 Total News사의 사이트와 링크되는 쪽의 사이트가 오인되지 않는 형태로 계약상에서 링크되는 쪽의 요구를 따르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결국, 재판소의 최종적인 판결은 이 사건에서는 표명되지 않았다.

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링크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사고방식은 매우 분분하다. 적어도 프레임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소재와 편성하여 표시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상표권의 침해 또는 불공정경쟁의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간단하다. 만약 프레임의 사용이 여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약간의 혼란을 일으킬 것 같다면, 제3자의 페이지와 이미지들은 프레임으로 링크하지 않거나, 사전에 각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된다.

### 3.3 링크 리스트

링크는 URL로서, 거리의 주소나 도서서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저작물성이 없다. 그러나 링크의 집합물인 목록의 경우는 저작권관계가 어떠한가. URL 목록의 이용은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전화번호부는 일반적으로 알파벳순으로 목록되어 있는 사실목록(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이다. *Feist v. Rural Telephone* 소송사건에서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목록이 단순히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에서이다(홍재현 1993)

무작위 목록들은 많은 웹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링크(특히 서브페이지 링크)의 URL목록을 만드는데 약간의 독창성 내지 창작성이 투입되었다면, 그것은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사한 링크목록을 보고 그 전체나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로 복제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상에서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현 상황에서 디지털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른 개인이나 조직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허락없이 자신의 웹페이지로 편집하지 아니한다.

(2) 자신의 도큐먼트를 만들기 위하여 소스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여러 인터넷 소스로부터 정보를 복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3)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한다.

(4) 다른 사람의 자료목록이나 링크리스트의 전체나 상당부분을 자신의 웹페이지에 복제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5) 명백하게 "freeware"로 광고하거나, shareware가 "무료"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의 로고, 아이콘 및 기타 그래픽을 자신의 웹페이지에 복제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보전문가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범위와 조건 및 이용허락의 준수 내용을 화면상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일부분이라는 분량제한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분량제한을 도서관측이 이용자에게 준수시킬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데이터베이스화된 음악이나 영상 등을 이용자에게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연주나 상영 등의 형태로 제시할 경우, 저작권법 제26조 1항이 적용되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권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 4.1 관내에서의 이용자 서비스

데이터베이스화에 즈음해서 복제권을 처리하여 적법하게 축적한 도서관자료를 도서관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서 복제물을 작성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28조 1호의 적용이 고려된다.

이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비영리 목적이고,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에게 1부씩 제공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아날로그 환경에서 적용가능한 일부분이라는 분량제한을 디지털환경 하에서도

### 4.2 관외에서의 이용자 요청에 응한 서비스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와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가장 큰 저작권문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 저작물을 관외로 전송서비스 하는 경우의 문제일 것이다.

이미 대학도서관은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를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 OPAC에 의해 제공되는 것은 대부분 망라적이고 가다다순, 알파벳순과 같은 기계적인 배열로 되어 있는 서지적 사항에 머물러 있으므로 저작물성은 없다. 이러한 경우 거기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더욱이 관련된 서지적 데이터를 추가시켜, 특정 주제에 관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공중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서관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저작물을 관외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의 문제가 생긴다. 현행법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권리제한은 있지만, 공중송신권에 대한 권리제한은 없다.

디지털저작물의 일부만을 송신하는 경우일지라도 공중송신권이 작용하므로, 도서관 등에서는 이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디지털도서관은 공중송신에 의해 디지털저작물을 서비스하는 것이 큰 특징이므로, 송신가능화의 단계에서 이 점에 대한 권리처리가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도서관 중에는 석사학위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외부에서도 이 학위논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할 경우에는 전송과 관련한 저작권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문이나 통보적 초록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가 대학 측에 이전되어 있지 않다면, 전송과 관련한 저작권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필자와 지도교수의 성명, 논제, 대학측에서 요구한 간결한 지시적 초록인 경우에는, 대학원생에 대해 저작권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송신에 즈음해서는 이용자의 이차적인 이용(복제나 공중송신,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는 중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므로, 이용자의 이용가능한 범위에 대한 것도 저작권자와의 교섭에서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기관 외에서의 접근, 현시, 복제,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정보·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거나, 보유하거나, 다수 인쇄하거나,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 및 배포해서는 안되며, 또한 지적 노력을 들인 서브페이지를 무단으로 링크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을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다. 비록 채택은 되지 못하였지만, 디지털저작물을 위한 미국의 「CONFU 공정사용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화면상에 경고문을 표시할 것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홍재현 1998).

아울러 이용자가 도서관으로부터의 디지털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받거나 대출받은 후 재복제 및 재가공 또는 변형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저작물의 무상의 온라인 제공 및 무상대출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5 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대책의 기본방향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물의 제공 및 전송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제 외국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비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 하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현을 위한 저작권 대책의 마련은 시급하다. 이에 본고는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를 설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6>은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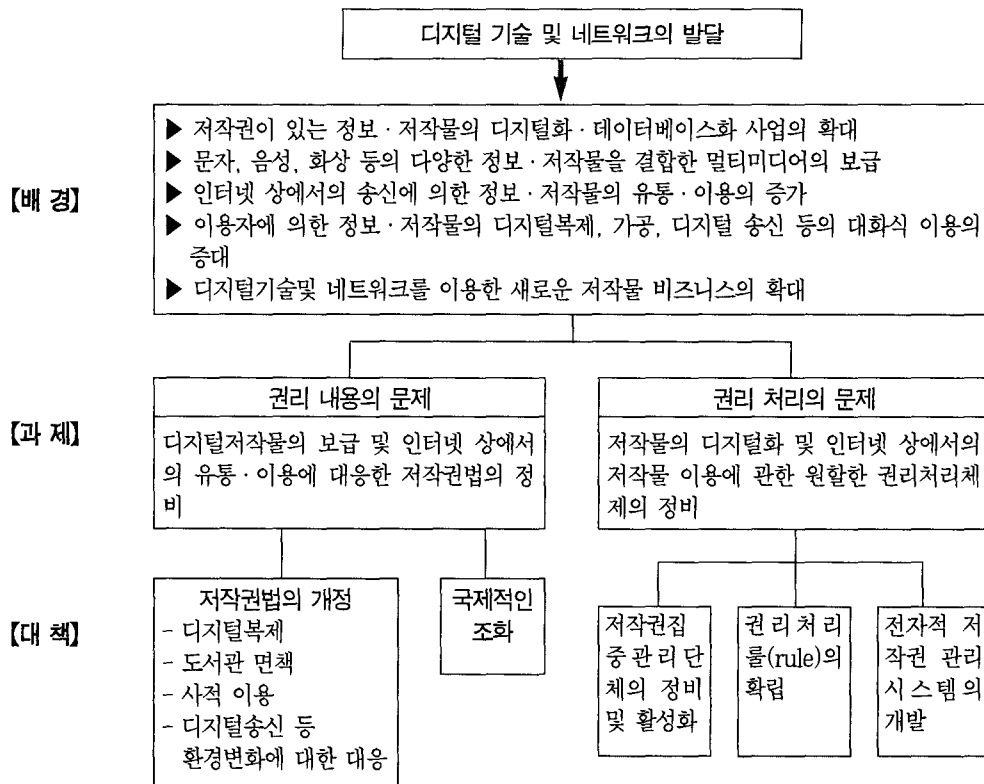
현행법은 아날로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테면 디지털복제, 디지털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면책, 네트워크 환경에 부응한 사적 이용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충분히 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전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말에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는 '공중송신권(8조)'이라는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WIPO 저작권조약에서의 공중송신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저작권 관계자와의 대화에 의해서 적절한 법규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적인 저작권 환경에 적



〈그림 6〉 인터넷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대책의 기본 방향

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저작권법은 국제적인 조화와 균형 도모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규모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적으로 허락 처리 등을 행하는 전자적 처리기술의 개발 및 응용과 관련한 전자적 저작권관리시스템(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전자적 저작권관리시스템의 주요한 역할은 유통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과, 그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거나 부정한 복제물을 검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적 저작권관리시스템이 실현해야 할 기능조건과 그것들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시스템을 상호운용하기 위한 표준화, 허락료의 지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개발 등이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7 결론 및 제언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디지털화 된 내용의 축적, 유통, 조직화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한 서지정보나 사실정보 또는 잡지의 목차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원문헌목록의 선택이나 배열이 눈에 띄는

경우에는 이용하기에 앞서 편집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 도서, 학술잡지, 논문, 보고서 등의 전문이나 통보적 초록의 디지털화시에는 권리관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용허락은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특약이나 조건을 명시한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명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저작물자체의 이용시 무단복제와 무단변경 등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웹 상황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공정사용 규정은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링크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서브페이지 링크에 의한 권리침해 사건으로 영국에서 *Shetland Times Ltd. v. Wills*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링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The Washington Post Company v. Total News, Inc* 사건이 발생하였다. 웹 상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단순히 TOP페이지로 링크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분위기이나, 서브페이지 링크, 일부 소재의 링크, 그리고 프레임기능을 이용한 링크의 경우, 무단 링크는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관내 이용자 서비스의 운영은 현행법상 제28조 1호에 의해 면책의 특권이 주어지나, 일부분이라는 분량제한을 디지털환경 하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도서관측이 그것을 이용자에게 준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또한 작성된 디지털저작물의 네트워크를 통한



관외 제공시는 공중송신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권리제한은 있지만, 공중송신권에 대한 권리제한은 없다. 따라서 송신가능화의 단계에서 이 점에 대한 권리처리를 해 두어야 한다.

결국 이상에서 검토 분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현 단계에서는 계약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 디지털도서관의 면책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법규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을 자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저작권관리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윤선희. 1998. "디지털 송신과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제42호. 여름호. 2-11.
- 이두영·홍재현. 1996.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189-221
- 이두영·유혜숙·조현양·홍재현. 1997.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과학재단.
- 이은숙. 1998.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구촌 통신과 저작권』. <<http://cdcc.kcaf.or.kr/ftp.htm>>.
- 홍재현. 1993.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_\_\_\_\_. 1996. "디지털 시대의 전자복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도서관』, 51(4) : 56-80
- \_\_\_\_\_. 1997.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 법리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관리학회지』, 31(4): 139-164.
- \_\_\_\_\_. 1998. "미국 학교 및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 261-275.
- 岡崎宏. 1997. "企業から見た電子圖書館." 『コピーライト』, 37(435): 62-63.
- 宮下佳之. 1997. "サイバ・スペ・スにおける著作権問題について." 『コピーライト』, 37 (439): 2-17.
- 藤原宏高. 1997. "インタ・ネットの直面する法的問題点." 『コピーライト』, 37(434): 2-21.
- 名和小太郎. 1997. "學術情報の電子化と著作権." 『コピーライト』, 37(440): 2-12.
- 苗村憲司. 1997. "著作権制度はインタ・ネットの敵か味方か." 『情報の科學と技術』, 47 (9): 458-464.
- 山本順一. 1997. "電子出版と電子圖書館における著作権." 『情報管理』, 40(8): 702-713.
- 小野寺夏生. 1997. "ファクトデ・タベ・スの著作権." 『情報管理』, 40(5): 414-424.
- "電子圖書館の著作権." 1998. 『コピーライト』, 38(445): 66-67.
- 板東久美子. 1997. "著作権を巡る當面の諸問題." 『

- ピライト, 37(437): 2-21.
- 片山純一. 1997. “デジタル化・ネットワ・ワ化に伴う著作権の課題.” コピライト, 37 (441): 2-17.
- BASIC. <<http://www.benedict.com/basic/basic.htm>>.
- Emily Madoff. 1997. “Freedom to Link Under Attack.” *The New York Law Journal*, June 23. <<http://www.ljextra.com/internet/0623link.html>> .
- “Frames Technology: The Internet Equivalent of Pirating?” <<http://www.ljx.com/internet/complain.html>>.
- Kuester, Jeffrey R. and Nieves, Peter A. “Hyperlinks: A Form of Protected Expression?” <<http://www.ljextra.com/internet/0126hyperlink.html>>.
- “Linking and Liability.” <<http://www.bitlaw.com/internet/linking.html>>.
- Montecino, Virginia. “Copyright and the Internet.” <<http://mason.gmu.edu/~mon tecin/copyright-internet.htm>>.
- Sampson, Martin H. 1997. “Hyperlink at Your Own Risk.” *The New York Law Journal*, June 24. <<http://www.ljextra.com/internet/0624hyper.html>>.
- Raysman, Richard and Brown, Peter. 1997. “Dangerous Liaisons: The Legal Risks of Linking Web Sites.” *The New York Law Journal*, April 8, <<http://www.ljextra.com/internet/0408lias.html>>.
- “Web Issues”. <<http://www.benedict.com/edge/webiss.htm>>.